
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주요 Q&A

2022. 3. 2.



중소벤처기업부

목 차

I 4분기 손실보상 주요변경 사항

1. 2021년 3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? 1
2.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방역조치 유형과 대표적인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? 2
3. '21.4분기 및 '22.1분기 선지급금 500만원을 지원받은 41만개 업체는 '21.4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? 2

II 보상 대상

4.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? 3
5.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? 3
6.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? 4
7.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손실보상 받을 수 있는지? 4
8. 타지역의 방역조치를 받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는? 4

III 보상금 산정

9.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? 5
10.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? 6
11.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다른지? 7

12. 현금매출도 고려되는지?	7
13.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는지?	7
14.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?	8
15.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, 영업이익률 고정비 비중은 어떻게 계산되는지?	8
16. '19년 자료가 없는 '20년 또는 '21년 개업자 보상액 산정은?	8
17. 보정률을 90%로 상향한 이유는?	9
18.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?	9
19.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?	9
20. 손실보상금의 상·하한액은?	9
21. 사업자번호는 동일한데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?	10
22. 인건비 및 임차료 반영 세부 기준은?	10
23. 아르바이트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되는지?	10

IV 손실보상 신청 및 이의신청

24.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?	11
25.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은 어떻게 다른지?	12
26.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?	12
27.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외 접수가능한지?	12
28. 사업자 번호가 바뀐 경우 각각 신청이 가능한가요?	13
29.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한데 폐업사실증명원 으로 대체하면 되는지?	13

- 30. 법인 사업자의 경우 손실보상금 신청을 대표가 한번만 신청하는지? 아니면 각 사업장별로 신청하는지? 13
- 31. 법인 사업자 본점과 지점의 각 매출 규모가 다를 경우 소기업 판단은 어떤 기준인지? (법인다수업체) 13
- 32. 직전년도 설립 법인의 소기업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는? 13

V 기 타 (예산, 콜센터 등)

- 33.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? 14
- 34. 손실보상금 입금 시 입금자명이 어떻게 표기 되나요? ... 14
- 35.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 할 수 있는 첨부파일 유형은 무엇인가요? 14

I

4분기 손실보상 주요변경 사항

1. 2021년 3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?

- '21.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.
- ① '21.3분기에는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, '21.4분기부터 시설 인원제한* 조치도 보상합니다.
 - * 좌석 한 칸 띄우기, 테이블 1m 거리두기, 면적당 인원수 제한, 수용인원 제한 등
- ② 보정률을 80%에서 90%로 상향합니다.
 - 방역조치가 지속 연장되고, 이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
- ③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- ④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·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.
- 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,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(단순경비율 등)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.

구분	2021년 4분기 손실보상	2021년 3분기 손실보상	
보상대상	①집합금지, ②영업시간 제한, ③ 시설 인원제한 조치 를 이행한 소상공인·소기업	①집합금지, ②영업시간 제한,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·소기업	
방역조치 이행기간	2021년 10월 1일 ~ 12월 31일	2021년 7월 7일 ~ 9월 30일	
보상금 산정 방식	산식	좌 등	
	매출액 추정	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, 지역·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	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
	보정률	90%	80%
	상한액	1억원	좌 등
	하한액	50만원	10만원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'21.3분기 정산금액을 '21.4분기 보상금에 상계 또는 추가지급 □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	-	

2.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방역조치 유형과 대표적인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?

- 시설 인원제한 조치는 시설 내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로서, 좌석 한칸 띄우기, 테이블간 1m 거리두기, 면적당 인원수 제한,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이 해당됩니다.
- 대표적으로 이·미용업, 결혼식장·돌잔치전문업, 실외 스포츠경기장, 전시회·박람회, 키즈카페 등이 해당하며,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·카페 등도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.

3. '21.4분기 및 '22.1분기 선지급금 500만원을 지원받은 41만개 업체는 '21.4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?

- 과세자료를 통해 실제 산정된 '21.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500만원을 차감한 이후 남은 금액만큼을 지급합니다.
- 만약 '21.4분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원 미만인 경우, 차감 후 잔여 선지급금을 '22.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합니다.
- '22.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 시, 해당 금액을 1% 초저금리 용자로 전환합니다.

II

보상 대상

4.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?

-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·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.
- 또한,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,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5.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?

- 손실보상의 대상은 ①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집합금지, 영업시간 제한,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소기업입니다.
- '21.3분기에는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, '21.4분기부터 시설 인원제한* 조치를 이행한 경우도 보상합니다.

* 좌석 한 칸 띄우기, 테이블 1m 거리두기, 면적당 인원수 제한, 수용인원 제한 등

6.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?

- 소기업 여부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라 해당 업체의 연평균 매출액*등으로 판단합니다.

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7조 : 개업시기에 따라, ①직전 3년 평균 매출액, ②직전 2년 평균 매출액, ③직전 1년 평균 매출액, ④월평균매출을 연매출로 환산 등

-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은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3에 따라, 숙박·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, 예술·스포츠·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, 도·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.

* (10억원 이하) 숙박 및 음식점업, 교육 서비스업 등
(30억원 이하) 예술·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
(50억원 이하) 도매 및 소매업, 정보통신업 등
(80억원 이하) 운수 및 창고업, 건설업, 광·농·임·어업, 섬유제품 제조업 등
(120억원 이하) 식료품·음료 제조업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, 전기장비 제조업 등

7.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?

- 해당 사업체가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·영업시간제한·시설 인원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,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체는 확인요청 대상입니다.
- 확인요청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분류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방청 확인 후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8. 타지역의 방역조치를 받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는?

- 사업장의 現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속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만약,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신속보상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경우, 확인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주소지 이전 증빙을 위해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등을 제출하셔야합니다.

III

보상금 산정

9.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?

- 손실보상금은 3분기 손실보상 산식과 동일하게 “월별 일평균 손실액 ×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× 보정률”로 산정합니다.

< 월별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>

2019년 동월 대비 2021년의 일평균 손실액			
2019년 동월 대비 2021년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× (2019년 영업이익률 +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+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)	×	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	×
			보정률 (90%)

-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'19년 대비 '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'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·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.
 - 방역조치이행일수는 '21.10.1.~'21.12.31.간 사업자가 집합금지·영업시간제한,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.
 - 보정률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3분기 80%에서 90%로 상향하였습니다.
-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분기별 상한액 1억원, 하한액 50만원 이 적용되어 최종 확정됩니다.

10.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?

< 월별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>

2019년 동월 대비 2021년의 일평균 손실액	×	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	×	보정률 (90%)
2019년 동월 대비 2021년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× (2019년 영업이익률 +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+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)				

□ 일평균 손실액은 ①'19년 대비 '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②'19년 영업이익률과 ③'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출됩니다.

①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'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에서 '21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을 뺀 값입니다.

- 과세인프라매출에 집계되지 않는 현금매출까지 고려하여 매출 감소액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도 활용합니다.
- '19년 또는 '21년 월 과세인프라매출액*이 없는 사업체의 경우, 지역·시설 통계값을 활용하여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출합니다.

*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결제금액, 전자세금 및 전자계산서발급액, 전자지급거래액

② 영업이익률은 '19년 매출액에서 '19년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으로, 종합소득세·법인세 신고자료를 활용합니다.

-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재시, '19년 단순경비율을 활용합니다.
('19년 귀속 경비율 고시)

③ 인건비·임차료 비중은 '19년 매출액 중 '19년 인건비와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으로, 영업이익률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·법인세 신고자료를 활용합니다.

-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재시, '19년 업종 평균값을 활용합니다.
('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)

11.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다른지?

- 일평균 손실액은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·임차료의 합을 곱해서 산정합니다.
-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셨던 2019년도와 비교하여 산정된 영업이익(순이익)의 감소분으로, 매출감소액과 차이가 있습니다.

12. 현금매출도 고려되는지?

-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매출을 고려하기 위해,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자료를 활용합니다.
- 구체적으로는 ①해당월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②연간 과세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비율을 곱합니다.

$$* \text{일평균 매출감소액} = \frac{\text{'19. 10월 과세인프라} \times \text{'19. 현금조정}}{31} - \frac{\text{'21. 10월 과세인프라} \times \text{'21. 현금조정}}{\text{'21. 10월 영업일}}$$

$$** \text{'19. 현금조정} = \frac{\text{해당 사업체의 '19. 신고매출액 합산액}}{\text{해당 사업체의 '19. 과세인프라 합산액}}$$

13.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는지?

- 과세인프라 매출액*에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액(전자지급거래액)도 반영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.

*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결제금액, 전자세금 및 전자계산서발급액, 전자지급거래액

14.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?

-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, 인건비*와 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(일평균 손실액)시 반영합니다.

* 급여 + 퇴직급여 + 복리후생비,

- 특히,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 등과 관계없이 '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·임차료 비중을 100% 반영하였습니다.

15.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,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은 어떻게 계산되는지?

- 영세 자영업자 등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국세청·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을 산정합니다.

- 영업이익률은 국세청의 「19년 귀속 경비율 고시」를, 고정비(인건비, 임차료) 비중은 통계청의 「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」를 활용합니다.

16. '19년 자료가 없는 '20년 또는 '21년 개업자 보상액 산정은?

- (일평균 매출감소액) '20년 또는 '21년에 개업하신 경우 해당 지역 내 동일시설의 '19년 대비 '21년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 비율과 업체별 매출규모를 활용하여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계산합니다.

- (영업이익률 등) '20년 개업자*는 '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'19년 업종별 평균값(단순경비율 등)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며, '21년 개업자는 '19년 업종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.

* '20년 개업자의 경우, '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개업 초기 투자 비용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낮게 나올 가능성 고려

17. 보정률을 90%로 상향한 이유는?

- 2021년 3분기에 80%였으나,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90%로 상향하였습니다.

18.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?

-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(개별 사업자등록번호)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.

19.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?

-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는 위반일이 속한 분기의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.
 - 위반일이 속한 분기의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, 다음 분기 보상금액에서 감액합니다.
- 감액 기준은 위반일이 속한 보상금을 위반 횟수에 따라 ^(1회)30%, ^(2회)50%, ^(3회~)100% 감액하며, 영업중단 조치가 있었을 경우에는 방역조치 이행일 수까지 차감합니다.

20. 손실보상금의 상·하한액은?

-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,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.

21. 사업자번호는 동일한데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?

- 사업자 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, 업종의 변경유무와 관계없이 해당하는 연도의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 산정합니다.

22. 인건비 및 임차료 반영 세부 기준은?

-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 나뉩습니다.

< 참고 : 신고유형별 인건비·임차료 인정 항목 >

신고유형		인건비 인정 항목	임차료 인정 항목
복식부기의무자	(표준손익계산서)	급여, 일용급여, 퇴직급여, 복리후생비	임차료, 리스료
	(표준원가명세서)	급여, 일용급여, 퇴직급여, 기타	임차료
간편장부대상자 (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)		급여, 복리후생비 및 노무비	임차료

23 아르바이트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되는지?

- 종합소득세 신고시, 아르바이트 비용을 일용급여로 신고한 경우 인건비로 반영됩니다.

IV

손실보상 신청 및 이의신청

24.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?

- 손실보상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(소상공인손실보상.kr)을 접속하거나, 사업장 소재지 내 관할 시·군·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,
 - 3월3일(목)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.
 - ① (신속보상) 별도 서류 제출없이 신청 가능하며,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(목)부터 시작됩니다.
 - 신청 초기 접속자가 몰리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,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첫 5일간(휴일 포함) 5부제가 실시됩니다.
 -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일(목)부터 23일(수)까지 첫 10일간(휴일 제외) 홀짝제를 운영합니다.
 - ② (확인요청·확인보상) 온라인 신청은 3월 10일(목)부터 시작되며,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5일(화)부터 시작됩니다.
 - * 신속보상 대상 미포함(확인요청) 또는 신속보상 금액에 부동의를 경우(확인보상)
 -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은 첫 5일간 5부제가 실시되고, 오프라인 신청은 10일간 홀짝제를 운영합니다.
 -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며,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하거나 시·군·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*하실 수 있습니다.
 - * 「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(안)」 별지 제1호 서식
 - ③ (이의신청)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,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3월 3일(목)부터 지방중기청, 전국 시·군·구청,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합니다.
 - 또한, 손실보상 콜센터(☎1533-3300)와 온라인 채팅상담(손실보상 114.kr)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.

25.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은 어떻게 다른지?

- 신속보상은 국세청·지자체 등의 행정자료*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,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절차입니다.
 - * 지자체 → 각 지역별 방역조치 시설명단, 국세청 → 과세자료
- 보상금 산정·심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, 신청 당일~2일 이내 지급이 가능합니다.
-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절차입니다.
 -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,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신청 이후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26.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?

-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,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·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온라인의 경우, “소상공인손실보상.kr”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,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.
 - 오프라인의 경우,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*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- * 「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(안)」 별지 제2호 서식

27.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외 접수가 가능한지?

-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온라인 접수(소상공인손실보상.kr)와 오프라인 접수로 나뉘집니다.
 -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.

28. 사업자 번호가 바뀐 경우 각각 신청이 가능한가요?

- 각 사업자번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이행한 방역조치 일수만큼의 보상금을 지급하므로, 개별 신청 가능합니다.

29.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한데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하면 되는지?

-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, 국세청에 이미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대신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

30. 법인 사업자의 경우 손실보상금 신청을 대표가 한번만 신청하는지? 아니면 각 사업장별로 신청하는지?

- 법인 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
 - 이는 사업장 별로 사업장등록번호가 있고, 지자체별로 사업장에 부과한 방역조치 의무가 상이하기 때문이며,
 - 보상대상에 해당할 경우,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·지급합니다.

31. 법인 사업자 본점과 지점의 각 매출 규모가 다를 경우 소기업 판단은 어떤 기준인지? (법인다수업체)

- 법인 사업자의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연평균 매출액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라, 각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.
- 다만, 가맹점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체로 보고,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만으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.

32. 직전년도 설립 법인의 소기업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는?

-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확정된 월별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 - 다만, 회계연도 중간에 신청하는 경우 정산된 손익계산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월별손익계산서를 가장 중인 세무사무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.

33.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?

-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(전화 1533-3300)는 평일 오전9시~오후6시 동안 운영됩니다.
-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3월3일부터 3월9일까지는 상담인력 1,000명 규모로 운영되며, 이후 3월 말까지는 600명 규모로 운영됩니다.
- 방역지원금 콜센터(1533-0100)에 연락하셔도 손실보상 관련 기본 사항(공고 및 Q&A내용)은 상담이 가능합니다.
- 아울러, 채팅상담(www.손실보상114.kr)도 45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
34. 손실보상금 입금 시 입금자명이 어떻게 표기 되나요?

- 입금자명은 “공단손실보상”으로 입금됩니다.

35.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 할 수 있는 첨부파일 유형은 무엇인가요?

- PDF, JPG, JPEG, PNG 등의 확장자명을 이용한 파일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.